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된다

- 모델 구분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중욱)은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을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하여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하여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하였다.

* 기존 10개 세부분류를 6개로 통합(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

아울러,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우모(조류의 털)’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재사용 우모 :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조류의 털)

김상모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오재철 (043-870-5410)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연구관	김용석 (043-870-5457)

붙임 1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

- (현행) 섬유제품 구분(예.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등), 조성 섬유, 색상에 따라 모델 구분 중이며, 색상이 다른 경우, 추가 시험 진행 후 동일 모델 인정
- (개정) 세분화된 제품 구분(10개)을 단순화(6개)하여 동일 모델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	< 개정안 >
10개 구분	6개 구분
외의류	외의류 (+ 신발류, 모자류)
중의류	중의류 (+ 장갑류)
내의류	내의류 (+ 양말류)
침구류	침구류
신발류	가방류
양말류	신생아용품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	

□ 아릴아민 시험방법 개선

- (현행) 아릴아민 시험 방법으로 KS 표준을 인용 중이나, '21년 개정된 표준*을 따를 경우, 시험 소요 비용·기간이 2배 가량 증가 예상
- * 기기분석 절차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 시험 비용 증가 불가피
- (개정) 최신 표준에서 사용된 용매 및 시험 조건을 반영하되, 기존 시험절차를 유지하여 시험 소요 비용 및 기간 등 현 수준 유지

□ '재사용 우모' 표시 가능

- (현행) 동물복지, 지속가능 패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사용 우모' 용어 사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시 근거 미비
- * 관련 표준에 따라 표기할 수 있으나, 재사용 우모는 표준 적용범위에서 벗어남
- (개정) 안전기준에서 '재사용 우모'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시 재질 및 혼용율 표시, 제품 분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수입연월로 제조연월 대체표기 가능

- (현행) 섬유제품의 경우, 제조연월 표시를 요구 중
- (개정)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나타내는 표시를 '수입연월'로 대체하여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